

‘임신·출산 및 산후기’ 분야 전산심사 적용기준 보완에 따른 안내

- 행위 관련 다빈도 심사 조정 예상 사례 유형 -

○ 의과 외래 임신·출산 및 산후기 분야의 상병전산심사 적용기준 보완에 따른 심사 기준 초과청구 등 다빈도 조정 예상 사례 유형을 발췌한 내용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□ 관련 제규정

-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

【별표1】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

1. 요양급여의 일반원칙
다. 요양급여는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.
2. 진찰·검사, 처치·수술 기타의 치료
가.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.

□ 다빈도 조정 예상 사례

항목	사 례	비 고
나-206가 불규칙항체 검사-선별 (B2061)	○ 「상세불명의 고위험임신의 관리」 상병에 청구한 불규칙항체검사-선별 검사는 -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 기준을 참조하여 불규칙항체검사-선별 검사의 진료상 필요한 사유 기재 내역 (특정내역, JX999)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인정하지 아니함	<나206가 불규칙항체검사(선별) 인정기준 (고시 제2008-169호, 2009.1.1.)> 수혈이나 임신을 통하여 생성될 수 있는 비예기항체(또는 불규칙항체)를 확인하는 검사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- 다 음 - 가. 수혈이 예상되는 환자에게 1회 인정 나. 수혈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3일마다 1회 인정 다. 지연성 용혈성 수혈반응이 의심되는 환자

항목	사 례	비 고
나-4 요침사현미경 검사 (B0041)	○ 「기타 정상임신의 관리」 상병에 요침사 검사(나-4-1), 요침사현미경검사(나-4)를 동시 산정 한 경우에는 - 관련 급여기준 등 참조하여 요침사 현미경검사 는 인정하지 아니함	<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(복지부 고시)> 제2부 제2장 검사료 나-4-1 주: 요침사현미경검사로 재확인하는 경우에도 소정점수만 산정한다.
나-472나 기생충 감염증 항체 [균종별각각 산정]-정밀 -IgM (C4722)	○ 「기타 정상임신의 관리, 기타(의심되는) 태아 이상 및 손상에 대한 산모관리」 상병에 기생충 감염증 항체[균종별 각각 산정]-정밀-IgM, 기생충 감염증 항체[균종별 각각 산정]-정밀-IgG검사, 기생충 감염증 항체[균종별 각각 산정]-일반 등 검사를 동시 산정 한 경우에는 - 감염원 IgM의 혈청학적 확인이 우선적 으로 사용되므로 기생충 감염증 항체 [균종별 각각 산정]-정밀-IgM 검사를 1회 인정함	<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> [별표1]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2. 진찰·검사, 처치·수술 기타의 치료 가.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 행위는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.
나-481 B형간염 표면항체 (C4811, C4812, C7481)	○ 「상세불명의 고위험임신의 관리」 상병에 산정한 B형간염표면항체 검사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사유 기재 내역(특정 내역, JX999) 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인정하지 아니함	
나-733 니트라진검사 (E7330)	○ 「상세불명의 정상임신의 관리」 상병에 산정한 니트라진검사 는 청구내역 및 상병 참조하여 인정하지 아니함	
너-13 태아 피브로넥틴 정성검사 (BX013)	○ 「상세불명의 정상임신의 관리」 상병에 산정한 태아 피브로넥틴 정성검사 는 임신시 조기 양막 파수, 조기 진통에 시행하는 검사로써,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사유 기재 내역(특정내역, JX999) 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인정 하지 아니함	